

의안번호	제603호
의결 연월일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1월 8일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3
----------	-----

제출연월일 : 2014. 1. 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령 조항 및 명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일괄 개정(조례 3건)

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 변경(제4조)

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 변경(제1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제1조, 제2조)

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 변경(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2. 13. ~ 2013. 12. 23.)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 인과의 학술용역계약</p> <p>5. ~ 6.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기능) ①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 ----- 교육 지원청-----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u>지역교육청</u>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p> <p>2. ~ 4. (생략)</p>	<p>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 -----.</p> <p>1. ----- ----- <u>교육지원청</u> ----- -----</p> <p>2. ~ 4. (생략)</p>

### 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p> <p>⑤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조(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0호, 2013.11.20.]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